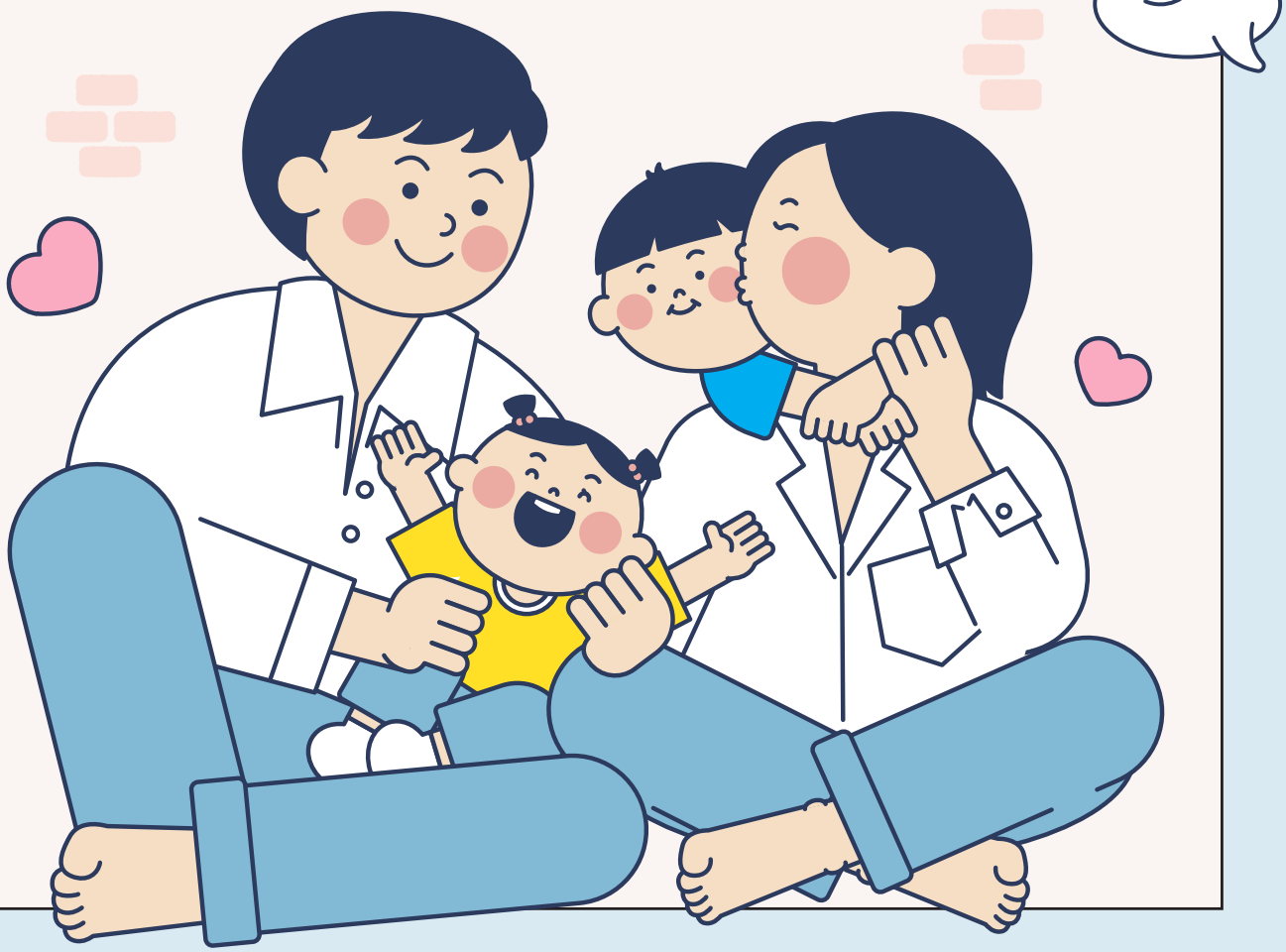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신고 지원 안내

성인편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1.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또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물어뜯는 행위
-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화상을 입히거나, 약물, 화학물질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2021년 1월) 안내
-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2.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아동에게 가정폭력 노출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3. 성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혹은 성교를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방임·유기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아동학대 의심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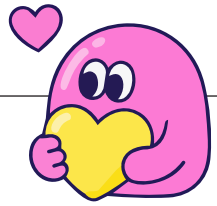
학대피해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건강상태 불량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가출, 자살시도
- 잦은 결석
- 늦은 귀가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양육 개념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긍정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긍정양육 129 원칙'



1.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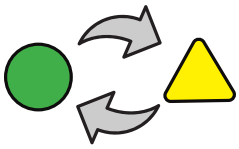
(예시) 낯가림 많은 아이의 적응 시간 기다려 주기



2.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예시) 아이가 실수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내 감정 먼저 살펴보기



3. 관점 바꾸기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꿔 보세요.

(예시) 아이의 잦은 질문을 호기심 표현으로 이해하기



4.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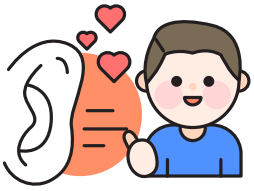
(예시) 아이 성장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할 기회 늘려주기



5.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예시) 아이와 대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내려놓기



6.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예시) 친구와 싸운 아이에게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기



7.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예시) 아이와 함께 정한 취침 시간 꾸준히 지키기



8.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예시) 순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냈다면 자녀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솔직하게 사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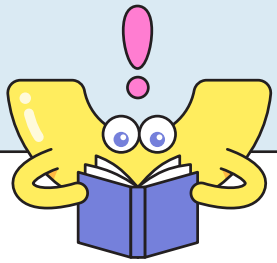


9. 함께 키우기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시) 양육이 힘들 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도움받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개념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 종사자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아동을 보호하는 총 27개 직군 해당
- 초·중·고교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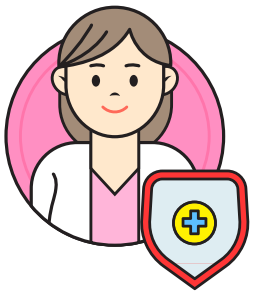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신고 시, 학대피해(의심)아동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야 하고, 조사와 사례관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



1. 불이익에 대한 보호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변에 대한 보호

-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 준용
-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등





3.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 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진행 절차

아동학대 대응 안내



1. 신고접수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2. 아동학대조사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하여 조사 및 정보 수집





3. 사례판단
일반사례 혹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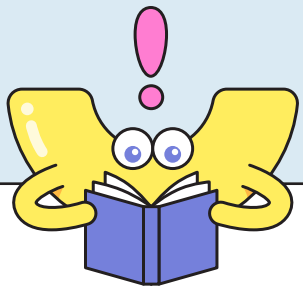
4.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 피해아동 상황에 따라 보호시설 보호 및 의료시설 인도
- 아동학대 상황에 따라 행위자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상담 및 교육 위탁





5. 사례관리
- (피해아동) 상담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교육 운영, 심리치료
- (피해아동가정) 상담·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가사),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의심·피해 신고 방법



경찰 112

아동학대 신고·조사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29에 6번 연결 시 아동학대 상담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아동가정 보호·상담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학대피해 장애아동 상담·조사·보호 지원

다누리콜센터1577-1366

학대·가정폭력 관련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통역·보호 지원

※ 피해의심아동이나 학대행위의심자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정보 안내

아동 양육 및 가정지원 기관



1 온라인 지원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02-6454-8500, www.ncrc.or.kr)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정책 수립 지원

아이사랑 (i-Sarang) (www.childcare.go.kr)

임신·출산·육아·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Good Parents, Happy Children) (www.mogef.go.kr/kps/main.do)

임신·출산·육아·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학부모On누리 (Parents On Nuri) (www.parents.go.kr)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창의성, 인성 교육 등 자녀교육 관련 콘텐츠 운영

복지로 (Bokjiro) (www.bokjiro.go.kr)

생애맞춤별 복지제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Health and Welfare Counseling Center) (129, www.129.go.kr)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 아동학대 관련 위기 대응 서비스 상담 및 안내



2 오프라인 지원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1577-0756, https://central.childcare.go.kr)

부모 교육 및 상담, 장난감과 도서대여 서비스, 놀이체험실 운영 등 양육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Family Center) (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교육과 상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 돌봄 나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제공 등 돌봄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rtal Danuri) (1577-1366,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신고 지원 안내

성인편